

# 학부·과 입학정원조정 및 학과구조조정 규정

제정 : 2022.04.19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교의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·과의 신설·통합·폐지·정원조정 등 본교의 학부·과 입학정원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학부 과란 교육편제 운영을 위한 학부 및 학과를 말한다.
2. 정원이란 학부 과의 입학정원을 말한다.
3. 정원조정이란 학부 과의 입학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, 교육편제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.
4. 구조 조정은 학부 과의 통합 신설 폐지 변경으로 구분한다.
  - 가. 학부 과 신설이란 새로운 학부 과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.
  - 나. 학부 과 폐지란 설치된 학부 과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.
  - 다. 학부 과 통합이란 2개 이상의 학부 과 및 전공을 하나의 학부 과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.
  - 라. 학부 과 변경이란 학부 과 및 전공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.

## 제4조(정원조정 기본계획의 수립)

- ① 총장은 매 학년도 8월까지 차 년도 학부·과 입학정원조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학과별로 공지 한다.
-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학부·과 신설, 학부·과 통합, 학부·과 폐지, 정원조정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 제5조(학부·과 및 전공의 정원조정 및 구조조정대상 선정 기준)

- ① 정부의 정책 또는 대학발전계획으로 정원조정 또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과는 정원조정 또는 구조 조정 대상학과가 될 수 있다.
  1. 대학 주요지표인 신입생총원율(정원외 제외), 재학생총원율(정원외 제외), 지표를 당해 연도 포함 3개년도별 결과 값을 가중(최근연도순 3:2:1) 평균한 값으로 하고, 신입생 총원율(60%), 재학생총원율(40%) 등을 반영한 결과 학과간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인 경우. 이때, 재학생총원율은 매 학년도 4.1 기준의 총원율을 반영한다.
  2. 최종 결과 학과간의 경쟁력이 평균 이하의 경우.
  3. 당해학년도 신입생 총원율 70%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과 및 전공인 경우.
  4. 직전학년도 재학생 총원율 70%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과 및 전공의 경우.
  5. 당해학년도 신입생 총원율, 직전학년도 재학생 총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학생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 경우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 될 수 있다.
- ② 학부·과별 정원조정 인원은 입학정원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하되 1항의 2호, 3호 결과에 따라 학생정원조정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.

## 제6조(학부·과 및 전공의 변경)

- ① 학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각 학부·과 전공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입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1. 학부·과의 명칭변경의 취지 및 전망
  2. 명칭이 변경된 학부·과의 운영방안
  3. 명칭이 변경된 학부·과의 교육계획
  4. 타 대학의 운영현황의 통계(경쟁률 및 총원율, 재학생총원율, 지역사회의 평가 등.)
- ② 정원조정위원회는 학부 과 및 전공의 변경 신청을 심의하여 매년 3월말 까지 가·부를 결정한다.

부 칙(2022.04.19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4월 19일부로 시행한다.